Ⅳ 맺음말 및 과제

■ 퇴직연금시장은 제도 변화에 민감한 시장인 만큼 이번「근퇴법」개정안은 퇴직연금시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.

○「근퇴법」개정안이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보험회사는「근퇴법」개정안 실시에 따른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미연에 운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○ 특히 과거에는 대기업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향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는 유인도 강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제도전환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성이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■ 즉, 보험회사는 건강보험을 가미한 퇴직연금 운용상품 제공으로 상품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 개인영업조직 신설,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○ 또한「근퇴법」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비하여 전문 퇴직연금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타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산운용 역량 제고가 요구됨.

○ 특히 안전성 위주의 실적배당형 상품, 라이프사이클형 펀드 개발 등을 통해 운용능력을 제고하고 복수사용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.

■ 정책당국은「근퇴법」개정 이후에도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대략 다음과 같은 과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.

■ 첫째, 복수사용자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어 시장질서가 혼탁해질 수 있으므로 대표사용자의 과도한 권한 행사, 불합리한 추가이익 제공 등에 철저한 감시가 요구됨.

○ 복수사용자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자칫 대표사용자의 과도한 권한행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- 다수의 기업이 그룹을 이루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만큼 복수사용자제도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시장질서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음.
- 특히 그룹의 규모가 크고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그룹을 대표하는 대표사용자의 권한행사가 발생할 수 있음.

○ 따라서 감독당국은 가입자가 부담해야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대신 책임지거나 불합리한 추가 이익을 제공하는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감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■ 둘째,「근퇴법」개정안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최소적립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적립수준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지급보장 장치의 도입이 요구됨.

○ 최소적립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할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적립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함.

○ 장기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를 도입하여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.[8)]

-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충분한 지급보장차원에서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.

■ 셋째, 미국, 호주 등 선진국 수준으로 퇴직연금 세제혜택을 대폭 증대하고 일시금 세제혜택은 축소·폐지하여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.

○ 연령 등 가입자 속성별로 세제혜택 수준을 차등화하고 일시금에 대한 정률비율공제[9)] 및 연분연승법[10)] 적용 등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.

■ 넷째, 확정급여형의 재정검증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적립과 부족 시 적기시정조치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.

○ 적립금 부족 시의 제재조치를 엄격히 규정하고 적립금의 상한한도 등을 설정하여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.

○ 연금계리사 등 제3자적 감시기능 장치를 마련하여 연금재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·검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.

■ 다섯째, 불공정거래의 금지를 통해 퇴직연금시장의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감독 강화와 불완전 판매 경감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
---

8) 최소적립수준이 100%까지 상향조정되더라도 수급권 보호가 되지 않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는 김대환·류건식(2011.1)의 pp.39~40을 참고.
9) 퇴직급여액(퇴직금)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금액의 40%에 대해 공제를 적용함.
10) 퇴직급여액에서 정률비율공제액과 근무연수별 공제액을 순차로 차감하여 구한 과세표준을 근무연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는데, 이러한 연분연승법은 세액을 낮추는 기능을 함.

○ 「근퇴법」 개정으로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충분히 감독될 수 있도록 인력의 확충 및 감독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.

○ 또한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관련 규정에 불완전 판매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(적합성 원칙 관련 규정,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 등)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.